#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알 림

## 개정 사항 개요

- 적용일자: 2025년 7월 1일부터
- 주요 변경 사항:
- 낙찰하한율 +2% 상향
- 품질 중심의 경쟁 유도

#### 낙찰하한율 변경

• 기존 vs 변경 기준:

추정가격 구간	기존 낙찰하한율	변경 낙찰하한율
~10억 미만	87.745%	89.745%
10억 ~ 50억 미만	86.745%	88.745%
50억 ~ 100억 미만	85.495%	87.495%
100억 ~ 300억 미만	79.995%	81.995%

# 수의계약 운영요령

### 수의계약 요령

- 견적서 제출 기준:
- 공사는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 감액 후 87.745% 이상
- 용역·물품은 88% 이상 제출 필요 (2천만원 이하인 경우 90% 이상)

#### 계약금액 결정 방법

- 계약금액 산정:
- 재난복구 공사 시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낙찰률 곱한 금액 이내로 결정
- 특정 조건 하에 계약금액 완화 가능

####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

#### 평가기준 개편

• 소규모 공사: 가격 중심 평가 강화

• 고액 계약: 기술력 중심 종합평가 유지

#### 입찰가격 평가

- 평점 산식:
- 평점(점) = 30 × ((예정가격 입찰가격) / (예정가격 A)) × 100
- A는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

## 결론

- 전략 필요성: 기업은 추정가격 구간별 맞춤 입찰전략 수립 필요
- 입찰 공고 시 A값 명시: 계약담당자는 입찰공고 시 A값을 명확히 해야 함

## 첨부파일

-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전문
-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개정 전문